

# 협동조합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 안내

(20.11.12. 협동조합본부 제도지원팀)

## ① 여성기업 인정범위에 일반협동조합 포함

- (제안내용)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여성기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이 제외되어 있어 개선 요청
  - \* 기존에는 상법상 회사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만 인정
- (이행현황) 여성이 소유·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일반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19.10.22. 시행)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가. 총 조합원수의 과반이 여성일 것
  - 나. 총 출자좌수의 과반을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다.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라.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 ② 장애인기업 인정범위에 일반협동조합 포함

- (제안내용)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 지정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포함 요청
  - \* 기존에는 상법상 회사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만 인정
- (이행현황) 장애인이 소유·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일반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지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20.6.16. 시행)

시행령 제2조(장애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며, 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 ③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제안내용)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도 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하게 지정기부금단체에 포함 요청

○ (이행현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도 지정기부금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고시 변경(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2호, '19.12.27.)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대상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포함(2020년 1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단,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공익사업(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 ④ 창업기획자(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대상에 협동조합 포함

○ (제안내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일정 요건의 상법상 회사 및 민법 등의 비영리법인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포함 요청

-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기부에 등록한 자
  - \*\*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 사업평가, 경영 컨설팅, 사업 알선, 자금 조달 자문 및 대행 등을 하는 자로서 중기부에 등록한 자
- (이행현황) 창업기획자와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대상에 일반협동조합(연합회)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시행(18.12.31.)

- \* 창업기획자의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2.11.)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관련 내용이 삭제·통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인 경우: 제25조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5]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제안내용)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면제 요청

- (이행현황) 교육·보건용역 부가세 면제 기관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 완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7.1. 시행)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6] 일반협동조합 우선출자제 도입

- (제안내용)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해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권·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 요청
- (이행현황) 일반협동조합 대상 우선출자제도 도입하는 것으로 법 개정 완료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시행(20.10.1.)

법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7] 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제 도입

- (제안내용) 휴면협동조합 폐해를 예방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법상 해산간주제\* 도입 요청

\* 법원행정처가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를 대상으로 영업 폐지 여부 확인 후 2월 이내 미신고시 해산 간주(상법 제520조의2)

- (이행현황) 휴면협동조합에 대해 해산간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법 개정 완료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시행(20.10.1.)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방법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허용

- (제안내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농협, 생협 등)의 연대를 위해 이종간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근거 마련 요청
- (이행현황) 기본법 협동조합과 생협·신협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 개정 완료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시행(20.10.1.)

**법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